

#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8. 6. 17  
내 무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8년 6월 9일

· 회부일자 : 1998년 6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· 제1차 내무위원회(1998.6.17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
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김선웅)

가. 제안이유

스포츠과학을 바탕으로 예방의학 차원에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위한 전문체력센터로서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합리적인 운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체력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, 학교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(제5조)
-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운영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함(제6조)
- 수탁관리자는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함(제12조)
- 독립채산제 운영을 원칙으로 함(제13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: 오건영)

충청북도 도민체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체력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체력센터의 주요사업은 도민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, 예방의학적 차원의 의학검진과 건강증진 상담소운영,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사업등을 하도록 하였고
-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한편
- 이용료 징수 및 조정은 수탁관리자가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도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고 이용료는 민간시설보다

적절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

- 운영 및 회계관리는 수탁관리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